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주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6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7.

발의의원 : 박주용 의원,

최재규 의원, 이연숙 의원

## 1. 제안이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위생업소의 위생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달성군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위생업소를 이용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달성군민의 건강 보호·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정의 인용 조문 명확화(안 제1조 및 제2조제4호)

나. 식품 안전 강화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관리 사업 지원 근거 신설(안 제4조제5의2호)

## 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(붙임)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공중위생관리법」 및 「식품위생법」” 을 “「공중위생관리법」, 「식품안전기본법」 및 「식품위생법」 등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“우수업소”란 위생업소로서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가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이 최우수 또는 우수인 업소

나.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

4.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, 「식품안전기본법」 및 「식품위생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에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식품 안전 강화 또는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관리 사업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2호는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우선 지원 시 우수업소 적용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지정받거나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 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 및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3. (생 략)</p> <p>2. “<u>우수업소</u>”란 위생업소로서,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업소나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에 따른 우수·모범업소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.</p> <p>〈<u>신 설</u>〉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----- 「공중위생관리법」, 「식품안전기본법」 및 「식품위생법」 등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b>제2조(정의)</b> ----- -----.</p> <p>1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<u>우수업소</u>”란 위생업소로서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이 최우수 또는 우수인 업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</p> <p>4.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, 「식품안전기본법」 및 「식품위생법」 등에서 정하</p>

제4조(지원사업) 군수는 지원대상  
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 
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~ 5. (생 략)

<신 설>

6. (생 략)

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지원사업)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5의2. 식품 안전 강화 또는 위생 수  
준 향상을 위한 위생 관리 사업

6. (현행과 같음)

## □ 「식품안전기본법(법률)」(2022.6.10. 일부개정, 2022.9.11. 시행)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식품등의 안전에 관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식품안전법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(이하 “식품안전정책“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제5조(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) ②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·판매등을 하여야 하고,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.

제27조(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)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이며 책임있는 식품등의 안전활동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 □ 「식품위생법(법률)」(2025.4.1. 일부개정·시행)

제47조(모범업소의 지정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(공유주방에서 조리·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) 또는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·검사·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,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**제47조의2(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)**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(공유주방에서 조리·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)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.

⑨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⑪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과 그 지정 절차, 제3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및 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**제89조의2(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·기술적 지원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, 조사·연구 사업, 해외 정보의 제공 및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**

**1. 재정수반요인**

- 위생업소에서 제공하는 식품 안전 강화와 서비스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관리 사업 지원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(안 제4조제5의2호)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(제3조제2항제2호)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위생업소에서 제공하는 식품 안전 강화와 서비스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 기준, 사업 내용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(안 제4조제5의2호)

※ 관내 위생업소 현황 [붙임] 참조(출처 : 위생과)

작성 자

소 속 및 직 위

달 성 군 의 회 의 원

성 명 (연 락 처)

박 주 용 (☎ 2292)

**붙임****관내 위생업소 현황(2025.9.30. 기준)**

① 「공중위생관리법」상 관내 업소 현황 : 1,059개소(전체)

구분	숙박업	목욕장업	이용업	미용업	세탁업	건물위생관리업
계	49	22	54	813	80	41

②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3조에 따른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등급 현황

- 전체 823개소(최우수 288, 우수 375, 보통 160)

2023년 말 지정		개소 수
구분		
이용업		50
	최우수	12
	우수	35
	보통	3
미용업		640
	최우수	237
	우수	300
	보통	103

2024년 말 지정		개소 수
구분		
숙박업		40
	최우수	23
	우수	13
	보통	4
목욕장업		16
	최우수	4
	우수	7
	보통	5
세탁업		77
	최우수	12
	우수	20
	보통	45

주 : 건물위생관리업은 해당없음

③ 「식품위생법」 상 관내 업소 현황 : 5,982개소(전체)

구분	개소 수	구분	개소 수
식품접객업소	4,204	식품제조가공업	771
일반음식점	3,071	식품제조가공업	197
휴게음식점	871	즉석판매제조가공업	441
제과점	78	식품첨가물제조업	7
단란주점	20	용기포장지제조업	43
유흥주점	67	식품소분업	69
위탁급식영업	97	식품냉동냉장업	3
		식품운반업	11
집단급식소	323	식품판매업	684
		유통전문판매업	88
		기타식품판매업	44
		식품자동판매기영업	145
		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	23
		건강기능식품판매업	384

④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현황 : 해당없음

⑤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현황

구분	계	최우수	우수	보통
개소수	175	159	12	4